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 종 섭

멕시코 ITAM대, 경제학

이 글의 목적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멕시코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조항에는 일반적인 제반 부문에 적용되는 것과 특수한 부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있다. 여기서는 일단 전반적인 산업에 적용되는 관세 철폐, 원산지규정 및 투자에 대한 협정 등을 분석한 다음 특수한 분야에 적용되는 규정 등을 살펴보려 한다.

1. 관세와 비관세 장벽

관세는 1991년 관세로부터 어떤 품목은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즉각 철폐되는 것부터 최장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것이다. 멕시코의 경제발전 수준을 감안하여, 멕시코의 관세 철폐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훨씬 느리게 이루어짐을 도표1에서 알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첫해에 멕시코의 수출은 84%가 미국에 무관세로 통과하지만 멕시코는 단지 43%의 미국 수출품에 대하여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철폐는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서 원래 합의된 것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도표1. 관세 철폐 예정표(%)

관세 철폐	멕시코로부터		멕시코로	
	미국	캐나다	미국	캐나다
즉시	84.0	79.0	43.0	41.0
5년	8.0	8.0	18.0	19.0
10년	7.0	12.0	38.0	38.0
15년	1.0	1.0	1.0	1.0

주) 멕시코의 수출·수입 중 관세없이 통관되는 비율

자료) Kessel과 Kim(1994)

그러나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친다든가 그렇게 할 위험성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관세인하를 중단시키든가, 또는 원래의 관세수준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 이 경우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하며, 산업 피해의 원인이 관세인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장치는 한번만, 그리고 최장 3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비관세 장벽에 관해선 GATT에 의거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수입 및 수출에 대한 허가제를 철폐한다.²²⁾ 이러한 비관세 장벽 철폐후 관세로만 멕시코산업에 대한 보호정도를 측정하면 도표2와 같다. 일반적으로, 무역자유화에 따른 관세개편을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관세개편에는 평균관세와 관세분산이 동시에 줄어 들어야 진정한 무역자유화라는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도표2에서 볼 수 있듯이 1991년과 2008년 사이에 북미지역내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평균관세는 13.2%에서 0%로, 관세 분산은 4.5%에서 0%로 줄어든다. 그러나 여타지역으로부터의 수입까지 감안하면 평균관세는 13.2%에서 4.4%로 줄어들지만 관세분산은 4.5%에서 4.6%로 증가하게 되어 관세체계는 오히려 더 차별적이 됨을 알 수 있다.

1) 여기에 예외가 되는 품목에는 에너지 부문, 석유화학 부문, 자동차 부문, 섬유 부문에 속한 것들이 있다.

도표2. 평균관세와 관세 분산(%)

년	NAFTA 평균관세	분산	멕시코 총수입의 평균관세	분산
1991	13.2	4.5	13.2	4.5
1994	6.5	7.0	8.9	6.2
1995	5.5	5.9	8.2	5.6
1996	4.4	4.9	7.6	5.1
1997	3.4	4.0	6.7	4.9
1998	2.3	3.4	6.0	4.8
1999	1.7	2.7	5.6	4.6
2000	1.2	2.0	5.3	4.5
2001	0.8	1.6	5.0	4.5
2002	0.4	0.7	4.7	4.5
2003	0.0	0.1	4.4	4.6
2006	0.0	0.0	4.4	4.6
2008	0.0	0.0	4.4	4.6

위의 분석을 더욱 세분하여 부문별 실효보호율을 계산하면 도표3과 같다. 실효보호율은 생산에 대한 보호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한 생산품과 그에 투입되는 요소에 대한 관세의 관계에서 도출된다. 한 예로 생산품에 대한 높은 관세와 생산요소에 대한 낮은 관세는 이 산업에 대한 높은 보호를 의미하게 된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산업의 실효보호율이 일률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으며 산업에 따라 여러가지 양태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맥주는 실효보호율이 1991년에는 17.1 %이던 것이 일률적으로 줄어들어 2008년에는 0.8%이 된다. 비료는 실효보호율이 처음에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소폭 상승했다가 그 이후엔 일률적으로 하락한다.

도표3. 실효보호율(%)

부문	1991	1994	1999	2004	2008
육류와 유제품	9.6	9.0	5.1	1.9	1.4
과일 야채 통조림	28.1	18.4	19.1	20.2	20.2
밀가루	31.2	20.4	2.1	-9.4	-9.4
온수수가루	17.4	15.7	6.9	-0.2	-0.2
식물성 식용유	15.9	14.9	13.0	11.0	11.1
동물용 먹이	11.9	8.9	-1.8	-1.3	-1.2
기타 식품	19.5	14.6	9.2	5.0	5.0
맥주	17.1	15.1	9.0	2.7	0.8
병 음료수	9.3	-3.2	-2.5	-2.0	-2.0
연삼유 직물	12.0	10.9	9.5	10.0	10.0
경삼유 직물	14.7	8.2	8.8	8.9	8.9
기타 삼유	16.4	11.4	4.2	2.4	2.4
의류	20.4	18.8	12.7	13.1	13.1
가죽 제품	12.8	16.1	14.2	12.8	12.8
석 제품	16.3	15.5	8.3	3.0	3.0
기타 목제품	18.6	14.7	7.5	4.4	2.8
제지	6.6	5.6	-0.1	-1.5	-1.5
인쇄·출판	5.3	2.0	1.2	0.8	0.8
석유제제	-5.3	-5.4	-2.2	0.2	-0.2
기초석유화학	1.5	-1.5	0.1	1.1	1.1
기초화학	6.8	3.8	2.6	1.5	1.5
비료	16.1	5.9	63	6.0	6.0
합성섬유	11.2	7.4	5.6	3.8	3.8
의약	9.8	9.1	8.2	7.7	7.7
세제·화장품	20.1	15.6	9.4	5.1	5.2
기타화학제품	11.0	6.1	5.6	4.5	4.5
고무제품	16.1	12.2	5.7	4.4	4.4
플라스틱	17.6	15.3	9.1	4.7	4.7
유리	15.5	13.1	7.8	5.1	5.1
시멘트	6.5	5.9	1.2	1.5	1.5
기타 비금속제품	15.8	14.8	10.5	10.0	10.0
철과 강철	8.5	4.2	6.0	4.1	4.1
비철금속	5.2	4.5	1.8	1.2	1.2
금속구조물	22.6	17.9	9.4	5.4	5.4
금속구조물	17.5	13.1	10.0	6.9	6.9
기타 금속제품	15.5	13.0	8.1	5.3	5.3
비전기 기계·장치	12.9	8.3	6.2	5.3	5.3
전기기계·창치	13.2	9.5	8.1	7.2	7.2
가전제품	20.9	18.2	11.0	6.9	6.9
전자기계·장치	15.2	10.5	7.0	7.2	7.3
기타전기·전자장치	15.5	12.6	8.7	5.2	5.2
자동차	20.6	14.0	7.6	4.0	4.0
차체·자동차 부품	12.4	9.5	5.0	3.3	3.3
기타 운송기계	5.5	1.7	2.5	2.5	2.5
기타 제품	14.1	7.0	6.2	5.9	5.9
평균	13.9	10.3	7.1	4.6	4.5
분산	6.5	5.9	4.5	4.5	4.7

자료: Kessel과 Kim (1994)

이러한 양태가 나타나는 것은, 여타국에 대한 관세는 1993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각각의 산업에 대한 NAFTA에서의 관세철폐속도와 여타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에 따라 실효보호율은 더 빠르게 또는 더 느리게 하락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일방적으로 수입개방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타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하할 것이 예상되며, 이것은 실효보호율을 일률적으로 하락시켜 관세체계를 더 중립적으로 만들 것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관세반환에 관해서이다. 멕시코에서의 관세반환은 현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든 관세반환제도는 폐지되고,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인정된 선에서만 관세반환을 할 수 있게 된다. 협정에는 관세반환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상한은 제품생산에 투입된 수입 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와 그 제품을 다른 회원국에 수출할 때 그 회원국에서 적용한 관세 중 낮은 것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3국에 대한 더 높은 관세에서 오는 무역왜곡효과를 줄이는 기능은 있지만 선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또 다른 왜곡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론적으로 경제통합의 한 나라에 대한 후생증대효과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왜곡효과에 달려 있다. 무역창출효과는 무역자유지구의 창설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하여 자국의 비효율적인 생산을 회원국의 제품수입으로 대체함으로써 얻어지는 후생증가효과이다. 무역왜곡효과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무역자유지구 회원국의, 관세가 없기 때문에 더 저렴한, 제품의 수입으로 대체함으로써 일어나는 후생감소효과이다. 한 나라의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왜곡효과를 능가하면 경제통합은 그 나라의 후생을 증가시키게 된다. 여기서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은, 멕시코가 여타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면, 회원국으로부터나 비회원국으로부터나에 상관없이, 제품이 싼 나라로부터 수입을 함으로써 무역왜곡효과를 줄여 후생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멕시코로서는 여타국에 대해서 일방적인 수입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2.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자유무역지구 회원국간에 관세가 다를 때,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관세가 낮은 회원국을 경유하여 다른 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이 지역내 생산업자에게 돌아가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에 있어서의 원산지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관세항목분류의 변화와 또 하나는 지역내용비 규정이다. 관세항목변화는 수입된 제품이 상당한 제조공정을 거쳐 수출할 때는 수입할 때와 다른 항목으로 수출될 때 적용되며, 원산지 규정을 만족한다고 인정되는 항목변화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관세항목변화로 원산지 규정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내용비규정을 만족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내용비 규정은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어느 제품을 수출할 때 그 가치의 60%가 지역내에서 생산되어야 그 제품이 지역내에서 생산됐다고 인정하는 거래 가치방식과, 또 하나는 생산원가의 50%가 지역내에서 생산되어야 원산지규정을 준수했다고 인정하는 순생산비방식이다. 순생산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자동차와 신발류를 비롯한 몇 가지 제품을 제외하고는 지역내용비 규정 중 어느 방식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은 이미 정착된 멕시코내 생산업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의 제조업부문 수출 중 약 1.6%만이 이 규정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중 반 이상이 외국자본을 갖고 활동하는 기업의 수출임을 감안하면 멕시코 기업보다는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이 규정의 제약을 받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조립수출을 하고 있는 일명 Maquiladora산업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 산업이 포함되면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멕시코 제조업 수출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또한 한국같이 미국시장을 겨냥한 조립공장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부품 산업이 발달한 부문에 투자하든가, 아니면 부품공장을 포함한 생산라인을 투자해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관세반환제도는 이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는 수출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관세반환제도에 의하면 원산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자재수입이나 제품수출에 대한 관세 중 낮은 것을 돌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원산지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한국을 포함한 제3국 Maqui

ladora산업에 대한 타격을 많이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 규정은 미국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멕시코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는 미국의 조립생산업체에 유리하며 제3국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잊을 수 있는 제3국 기업은, 관세철폐와 수송비절감 그리고 낮은 임금을 이용하기 위하여 멕시코 부품 산업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멕시코 부품 산업의 발달이 기대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이미 조립공장을 갖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여 미국에 관세 없이 수출하기 위해 부품공장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3. 투자

역사적으로 볼 때 멕시코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은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보호하의 경제에서 외국자본의 독점 또는 경쟁은 국내 시장에 기초한 국내기업의 기반을 저해하며 따라서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Salinas정부이후 많이 완화되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와 NAFTA로 인한 성장잠재력은 Salinas정부의 첫 5년 동안 300억불 이상의 직접투자 유입을 가져왔다.

그 동안 직접투자 추이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 산업과 농업, 축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것과 직접투자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자본의 독점을 배제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멕시코는 NAFT A로 미국과 캐나다의 투자가들에게 멕시코에로의 투자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없애고 동시에, 제3국에도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합의는 내국대우와 최혜국대우에 근거한다. 말하자면 미국과 캐나다로부터의 투자에 대하여는 내국인 투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하며, 제3국의 투자에 혜택을 준다면 적어도 그와 동등한 혜택을 회원국들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에게 투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협정은 투자가들이 국내통화를

시세에 따라 외국통화로 자유로이 바꿀 수 있으며 자유로운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또한 몰수와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몰수나 국유화는 대중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몰수를 했을 경우 투자가에게 시장가치에 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며 보상이 지연될 시에는 상응하는 이자지불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멕시코에서는 외국인 회사를 국유화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은 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일 뿐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많은 예외 조항이 있으며, NAFTA협정은 반 이상의 지면을 예외조항에 할애하고 있다. 각 부문별 예외 조항의 수는 도표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멕시코가 가장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모든 나라들이 운송부문에 가장 많은 예외를 두고 있다. 국내 규제가 많은 부문에 많은 예외를 두는 것은 모든 나라들의 공통된 현상으로 보인다.

도표4. NAFTA 부록1에 나타난 투자에 대한 예외 조항의 수

부문	멕시코	캐나다	미국
모든부문	5	7	1
운송	17	9	4
통신	8	0	1
제조업	6	0	1
전문 · 기술 용역	9	0	1
회사에 대한 용역	0	5	1
에너지	2	4	1
기타	9	4	4
합계	56	29	15

자료: mentineg (1994)

4. 산업별 연구

이미 언급한 많은 예외 조항의 존재는 NAFTA로 인한 각 산업의 대한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각 부문별로 합의된 내용과 미국과 비교한 멕시코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함으로써 NAFTA의 각 부문별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4.1. 농업

NAFTA에 임한 멕시코 농업의 위치는 Uruguay Round에 대한 한국 농업의 위치와 유사하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5백만으로서 그 중 대부분이 주식인 옥수수와 콩을 경작하고 있다. 문제는 멕시코가 이러한 곡물 생산에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데 있다. 한 예로 옥수수의 면적당 생산량은 미국의 1/4 밖에 안된다. 따라서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경쟁력 있는 생산물이 미국 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력 없는 생산물에 대해서는 적용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NAFTA에 의하면 멕시코와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관세나 관세-쿼터로 바꿈으로서 농업에 있어서의 비관세 장벽을 NAFTA 발효와 함께 철폐하게 된다. 관세-쿼터라 함은 해당 제품의 일정량을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으며, 이 쿼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쿼터는 최근의 평균 수입량에 의해 결정되며 매년 3%씩 증가한다. 관세는 매년 감소하여 10년 또는 15년 안에 완전 철폐하게 된다. 한 예로 북미자유무역협정 전에 수입허가제가 적용되었던 옥수수는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쿼터를 적용받게 되어 215%의 관세와 250만톤의 쿼터를 적용받게 된다.

대부분의 농산물은 10년안에 완전 수입자유화되게 되지만, 농산물 중에서도 주식인 옥수수와 콩은 제일 민감한 품목으로서 완전 수입자유화 기간을 15년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농업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이나 자원의 재배분을 위해서, 이 기간은 짧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농촌 현대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처음 십년 동안은 일정한 생산물에 대해서 수입이 회원국들간에 미리 합의한 수준을 넘어서면, 수입국은 협정 발효 당시의 관세와 최혜국 관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

무역구조에 있어서 멕시코 농산물 수출의 1/3 가량은 채소류로서 이 작물의 수출은 증가되리라 예상되지만, 미국에서 이미 낮은 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한편 미국과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곡물류는 멕시코 농산물 수입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2. 에너지 및 석유화학산업

이 부문은 외국인 손에 있던 것을 오래 전에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국유화시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유부문은 정부 규제가 가장 심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석유에 대한 탐사, 개발, 정제와 판매가 모두 정부 석유회사인 PEMEX에 국한되어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이 부문을 부분적으로 개방시켰으나 어떤 면에서는 개방과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유화학 부문에 있어서 규제를 받고 있는 분야는 기초석유화학과 이차석유화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은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기초석유화학에는 석유공사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차석유화학은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이차석유화학제품의 생산에는 40%의 외국자본 참여가 허용되어 있었다.

NAFTA로 인하여 이차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제한이 없어지게 되지만, 석유산업과 기초석유화학산업은 계속 석유공사만 참여할 수 있다. 미국과 멕시코에서 이 부문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관세는 현재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는 이렇다 할 무역 증가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산업 특성상 생산이 비교적 수직적, 지역적 통합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도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NAFTA는 기초석유화학에 자의적으로 포함된 품목 수를 줄이고 대부분의 석유화학생산에 기본원료로 투입되는 품목만 남김으로써, 민간기업이 규제가 해제된 이들 품목에 참여할 수 있어, 생산의 수직적 통합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차석유화학의 외국인 투자규제 철폐는 이 부문의 투자

촉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산업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차석유화학산업에 투입요소로 쓰여지는 원료들이 대부분 석유공사가 생산하는 기초석유화학 생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멕시코 석유공사는 민간기업들과 장기공급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료 수급의 불확실성을 줄 뿐 아니라 가격도 국제가격 이상을 요구함으로써 이차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도 완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면도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각 회원국이 기초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 부문의 무역은 이 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던 협정 이전보다도 더 제한적이 됐다. 또한 멕시코의 최종소비자가 미국이나 캐나다의 공급자와 공급계약을 맺을 수는 있으나 이 때도 석유공사가 간여하게 되어 있다. 가스관에 대한 투자와 그 운영에 관해서도 협정은 석유공사를 독점적인 위치에 놓음으로써 민간 부문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이 부문의 개방과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조치들은 이 부문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 금융산업

멕시코의 금융산업은 최근에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 중요한 변화를 겪었지만, 아직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그 발전 수준이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 예로 멕시코에서는 예-대금리차가 5-9%에 이름으로써 3.5% 정도인 미국의 두 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운영비용이 4-7%로 미국의 3.2%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수익률은 미국보다 높긴 하지만 예-대금리차만큼 높지는 않다. 발전 수준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로는 지점망이 있다. 멕시코의 지점수는 인구 18000명당 하나로서 미국의 인구 4000명당 하나의 사분의 일도 안된다. 이러한 비효율은 과다한 규제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문에서의 외국인 회사의 참여는 매우 제한된 활동만 할 수 있는 사무소 설치에 불과하다. 외국 자본의 참여는 은행과 증권회사의 경우 30%로 제한돼 있으며 경영권의 제한도 받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멕시코 금융산업을 경쟁하에 놓이게 함으로써 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는 다른 산업의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금융산업개방과 이에 따른 이 산업의 효율성 향상은 다른 생산활동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빠른 개방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경쟁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서 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NAFTA는 금융산업개방을 부분적, 점진적으로 함으로써, 보호를 필요이상 오래 지속하는 선에서 협상이 맺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NAFTA에 의하면 2000년까지 한 외국은행이 총여신기관의 순자본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000년 이후 이 제한은 없어지게 된다. 모든 외국은행의 총자본은 시장참여율이 1994년에는 8%로 제한되며 2000년에는 15%로 그 제한이 증가하게 된다. 2000년 이후에도 일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멕시코는 안정장치를 사용하여 자국 금융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제한이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외국은행과 외국증권회사에 대해 일부 활동도 제한된다. 보통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3년 안에 이루어지므로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나타난 멕시코 금융산업에 대한 이러한 6년 이상의 규제와 보호의 지속은 길다고 여겨진다.

외국기업의 멕시코내 금융활동은 멕시코내의 자회사 설립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관이 멕시코기업에 용역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현재 멕시코 기업에 용역은 주고 있는 미국금융기관은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고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고객은 대부분 대규모 고객으로서 소규모 고객은 지사망과 정보망의 미비로 외국 기관이 침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4.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은 수출에 있어서 석유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약 64억불을 수출하였다. 이는 제조업부문 수출의 4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부문은 지금까지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제는 매년 소폭의 적자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 자동차 부문의 무역은 산업내무역으로 특징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수출내용면에서도 자동차 완제품, 엔진 등 고부가가치 산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 산업의 특징은 5개 다국적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97%를 생산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GM, Ford, Chrysler, Nissan과 Volkswagen 등이다. 자동차 조립회사들은 이미 100%의 외국자본참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NAF TA에는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자동차 부품업체는 현재 40%로 돼 있는 외국자본참여 허용비율을 NAFTA가 발효되는 첫해에 49%로 올리게 되며 발효 6년 후에는 100%로 올리게 된다.

멕시코에서 자동차수입에 대한 관세는 현재 20%이다. 그러나 자동차수입에 대한 가장 큰 장벽은 자동차 명령(Decreto Automotriz)에 따른 규제일 것이다. 이 명령은 자동차 부품 거래를 포함한 무역수지가 혹자를 기록한 자동차생산업체만이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이 명령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국내시장 판매와 수출 비율에 따라 변하는 국산화비율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즉시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로부터의 승용차와 경트럭 수입에 대해 관세를 반으로 내리게 되며 그 후 각각 10년과 5년에 걸쳐 완전 철폐하게 된다. 나머지 자동차에 대해서도 10년 안에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다. 미국은 멕시코로부터의 승용차 수입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를 하게 되며, 트럭과 다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5년 또는 10년 사이에 관세를 완전 철폐하게 된다. 캐나다는 멕시코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에 대해, 멕시코에서 캐나다 자동차수입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관세인하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멕시코는 10년동안 승용차와 경트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기간동안 자동차 수입은 자동차 명령에 따른 요건들을 충족하는 자동차 생산업체들만 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수입허가제가 없어지게 되며 아무나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삼국 사이의 자동차 무역과 투자에 관한 규제는 10년 안에 모두 없어지게 된다.

이 부분에서의 또 하나의 쟁점은 원산지 규정이었다. 제3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원산지 비율을 다른 품목보다 높게 책정하였다. 승용차와 경트럭 그리고 이들의 생산에 사용되는 엔진과 변속장치는 순생산비 방식의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며, 62.5%가 지역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그 외의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60%가 지역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자동차부문에 적용되는 이상의 규정들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로 하여금 멕시코에서는 지금보다 적은 수의 모델만 생산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모델은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으로 그 수요를 충족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여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을 더 다양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일반적인 조항들과 특수한 산업에만 적용되는 예외 조항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멕시코의 정책이 보호주의 정책에서 개방적인 정책으로의 선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80년대 중반부터 추구해 왔던 개방정책과 규제완화 조치들과 일련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협정의 가장 큰 의미는 멕시코 경제정책을 개방화 방향으로 묶어 둠으로써 정책일관성을 가져다주어 국내 와 외국 투자가들에게 불확실성을 덜어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 de Melo, Jaime, Arvind Panagariya and Dani Rodrik (1992). "The New Regionalism: A Country Perspective,"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 Series No. 715.
- Fernández, Manuel, "Regulaciones en Materia Automotriz, in Georgina Kessel (ed.), *Lo Negociado del TLC - Un Análisis Económico sobre el Impacto Sectorial del Tratado Trilateral de Libre Comercio*, (McGraw-Hill, México, 1994).
- Gavito, Javier and Ignacio Trigueros, "Los Efectos del TLC sobre las Entidades Financieras," *ibid.*
- Kim, Chong-Sup and Georgina Kessel, "Características del Desarrollo Tecnológico y su Contribución a la Producción Industrial y el Comercio Internacional: El Caso de México," (Academia Nacional de Ciencias, México, 1994).
- Kessel, Georgina and Chong-Sup Kim, "The Mexican Petrochemical Sector in the NAFTA Negotiations," *Energy Jouznal*, Vol. 14, No. 3, Sept. 1993.
- Kessel, Georgina and Chong-Sup Kim, "Desgravación Arancelaria y Reglas de origen en el Tratado Trilateral de Libre Comercio," in Georgina Kessel (ed.), *Lo Negociado del TLC - Un Anhlisis Económico sobre el Impacto Sectorial del Tratado Trilateral de Libre Comercio*, (McGraw-Hill, México, 1994).
- Kessel, Georgina and Chong-Sup Kim, "El Sector Petroquímico en el Tratado Trilateral de Libre Comercio," *ibid.*
- Lelo de Larrea, Elizabeth, Pola Strauss and Sergio Sánchez, "México en el Mercado Automotriz Norteamericano," in Eduardo Andere and

- Georgina Kessel (eds.), México y el Tratado Trilateral de Libre Comercio, (McGraw-Hill, México, 1992).
- Martinez, Gabriel, "Inversión en el Tratado de Libre Comercio," in Georgina Kessel (ed.), Lo Negociado del TLC - Un Análisis Económico sobre el Impacto Sectorial dal Tratado Trilateral de Libre Comercio, (McGraw-Hill, México, 1994).
- Sánchez, Manuel, "Entorno Macroeconómico frente al Tratado de Libre Comercio," in Eduardo Andere and Georgina Kessel (eds.), México el Tratado Trilateral de Libre Comercio - Impacto Sectorial, (McGraw-Hill, México, 1992).
- Shepherd, Geoffrey and Carlos Geraldo Langoni, eds. (1991) Trade Reform - Lessons from Eight Countries, International Center for Economic Growth, ICS press, San Francisco, California.
- Vélez, Félix and Gloria M. Rubio, "El Impacto del Tratado de Libre Comercio en el Campo Mexicano," in Georgina Kessel (ed.), Lo Negociado del TLC - Un Análisis Económico sobre el Impacto Sectorial del Tratado Trilateral de Libre Comercio, (McGraw-Hill, México. 1994).